

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5년 4월 11일

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근무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임용인원	임용기간	담당업무
건축구조	건축과 (건축안전센터팀)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(6급상당)	1명	임용일 ~ '28. 1. 31. (전임자 잔여기간)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 및 「건축물관리법」 으로 정하는 업무 등 - 건축구조·시공분야 적합성 기술검토 및 지원 - 안전점검 구조·시공분야 점검실시 - 건축물, 건축(해체)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리 관리감독 - 재난재해지역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 - 건축물 안전점검, 구조·시공분야 기술 지원·자문 등

※ 담당 업무는 채용 및 업무분장 시 달라질 수 있음

2 법령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
-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-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」
-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물관리법」

3 응시자격 요건

■ 공통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응시연령 : 만 20세 이상
- 지역·성별 제한없음 (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§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§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삭제
 - 바. 삭제
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-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■ 임용분야 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임용분야	자 격 기 준
건축구조 [시간선택제 임기제(나급)] 주35시간 (7시간/1일)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구조 분야 업무경력

- 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- ※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
: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
- ※ 전임근무(8시간/1일)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(예시:주20시간 근무)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- 근무조건 : 주 5일 근무(1일 7시간, 주 35시간)
- 보 수 : 연봉제로 하며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책정범위 내에서 결정
(단위 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
		주40시간	주35시간 적용 시
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(6급상당)	83,677천원	55,756천원	48,787천원

- ※ 임기제공무원(6급상당)의 연봉하한액에 근무시간(주당 35시간)을 적용하여 연봉 책정
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
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■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5. 4. 30.(수) ~ 5. 2.(금), 3일간	2025. 5. 8.(목)예정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 게시	

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

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을 출력하여 사용
- 접수기간 : **2025. 4. 30.(수) ~ 5. 2.(금)**/3일간, 09:00~18:00
- 접수장소 : 수성구청 건축과(본관 4층 건축안전센터팀)
-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등기)
 -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 - 주소 : 우(42086)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, 수성구청 건축과(4층 건축안전센터팀)
 - ※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(09:00~18:00)(중식시간 제외:12:00~13:00)
 - ※ 우편접수 시 반드시 사전 유선연락(☎053-666-2796)
 - ※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 - ※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■ 시험방법

- 1차시험(서류전형)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서류전형 기준 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
 - 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
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 - ※ 응시자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

○ 2차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면접항목은 5개 항목 100점 만점(분야별 20점)으로 구성되며, 항목별 상(20~16), 중(15~11), 하(10~6)으로 구분 평정

※ 면접심사 평가항목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, 품행, 성실성 |
| 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

※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때

- 적격자가 없을 경우(모두 불합격인 경우)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 제출서류

○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서식 제1호) 1부

○ 응시원서(별지서식 제2호) 1부

- 응시수수료 : 수입증지(7,000원)를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입
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
○ 이력서(별지서식 제3호) 1부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※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제4호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서식 제5호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서식 제6호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서식 제7호) 1부
-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 -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(별지서식 제8호) 제출
-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
 -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
 - 재직기간, 직위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,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, 연락처 기재
 - 경력증빙자료(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)
 -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⇒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 - 경력(재직)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9호) 추가 제출
(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)
-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-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서식 제10호) 1부

7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 - ※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 - ※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
-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,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(☎053-666-279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직무기술서

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건축구조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(6급상당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 수성구	도시국 건축과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구조·시공분야 적합성 기술검토 및 지원 ○ 안전점검 구조·시공분야 점검실시 ○ 건축물, 건축(해체)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리 관리·감독
-------------	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, 조직이해능력(조직체제이해능력) ○ (직급별 역량)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문제해결능력, 창의력
-------------	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 ○ 건축물, 건축(해체)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리 관리·감독 ○ 건축물 안전점검, 구조·시공분야 기술지원·자문 전략
-------------	---

관련분야 : 건축안전 관련(건축구조)	
응시 자 격 요 건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격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▶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구조 분야 업무경력</p>